신규임용교원 재임용 규정

개정 2019.04.17. 개정 2019.11.27. 개정 2022.04.04. 개정 2022.04.12. 개정 2022.07.25. 개정 2022.11.02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교원인사규정 제22조(절차)에 의거 신규임용교원의 재임용·재계약 심사에 대한 정량적, 정성적 기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9.11.27.>

제2조 (적용범위)

이 규정은 본교 신규임용교원에게 적용하며 신규임용교원은 최초임용 후 재임용·재계약하지 않은 교원을 말한다.

제3조 (심사대상)

신규임용교원의 재임용·재계약 심사는 부교수나 조교수의 교원으로서 최초임용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 (재임용기준)

① 신규임용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2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의 재임용·재계약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본조 제2항 내지 5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재임용 또는 재계약될 수 있다.

② 신규임용교원 재임용·재계약을 위한 종합 평정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2.11.02.>

1. 교원업적평가 환산 점수 : 60점
2. 별표 1에 의한 학과교수 평가서 : 20점
3. 별표 3에 의한 대학본부 평가서 : 20점

③ 제2항 제2호 학과 교수 평가는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 전원이 평가한 것에 의하고, 제2항 제3호 대학본부 평가는 총장, 교무처장이 평가하는 것에 의한다.<개정 2019.04.17., 2022.04.04., 2022.04.12., 2022.11.02.>

④ 신규임용교원의 재임용·재계약시에 필요한 최소 종합 평정점수는 70점으로 한다.

⑤ 학과가 신설되었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학과 평가가 불가한 경우 교무처장이 평가한다. <개정 2022.11.02.>

제5조 (심사결과에 대한 처리)

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위 제4조에 의한 각 인사 대상자의 심사결과와 심사평정표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신규임용교원이 재임용·재계약 심사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교원인사규정 제22조(절차) 제④항에 의거 재임용·재계약에서 제외한다.<개정 2019.11.27.>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6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례)

이 규정의 적용은 2016년 09월 01일부 임용한 신규 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9.04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11.2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4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4.1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07.25>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11.02.>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신임교수 학과 교수평가서

□ **평가대상자 :**

구 분	평 가 요 소	평 가 점 수 (해당란에 점수기재)			비고
		상	중	하	
기본자질 (20)	•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, 인간관계의 원만성,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, 적정 등	(20~15점)	(14~8점)	(7~1점)	
교수능력 (30)	• 자기개발, 교수열의와 수업실태, 교육효과(학생 반응), 학습개발 및 활용, 학습방법개선 등	(30~21점)	(20~11점)	(10~1점)	
학생지도 (30)	• 개인 및 집단지도, 설득 및 감화능력, 면학분위기 조성, 학내 행사참여 및 지도 등	(30~21점)	(20~11점)	(10~1점)	
취업지도 (10)	• 졸업생 및 재학생의 취업활동 지원 등	(10~8점)	(7~4점)	(3~1점)	
입시활동 (10)	• 고교방문 홍보활동, 입학설명회 참여 및 유치활동, 기타 홍보활동 등	(10~8점)	(7~4점)	(3~1점)	
총점		점			

평가자	소 속		직위		성 명	(인)

[별표 2]<개정2019.04.17., 2022.04.04., 2022.07.25.>

신임교수 학과 평가결과표

평가자		항목별 평가점수					총점	평가 결과 =A/ 평가자인원 *20%
소속	성 명	①기본 적자질	②교수 능력	③학생 지도	④취업 지도	⑤입시 활동		
평가점수 합계 A								

확 인 자 : 교무처장 (인)

[별표 3]<개정 2019.04.17.>

신임교수 본부 평가서

☐ 평가대상자 :

구 분	평 가 요 소	평 가 점 수 (해당란에 점수기재)			비고
		상	중	하	
교수•연구역량 (30)	• 자기계발, 교수열의와 수업실태, 교육 효과(학생 반응), 학습개발 및 활용, 학습방법개선 등 • 연구업적실적의 질과 내용 등	(30~21점)	(20~11점)	(10~1점)	
학생지도역량 (40)	• 개인 및 집단지도, 설득 및 감화 능력, 면학분위기 조성, 학내 행사참여 및 지도 등 • 학생지도에 대한 평가 • 졸업생 및 재학생의 취업활동 지원 등	(40~28점)	(27~14점)	(13~1점)	
교수자질 및 기본역량 (30)	•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품위, 인간관계의 원만성,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 등	(30~21점)	(20~11점)	(10~1점)	
총점		점			

평가자	소속		직위		성 명	(인)

[별표 4] <개정2022.07.25.>

신임교수 본부 평가결과표

평가자		항목별 평가점수			총점	평가 결과 =A/ 평가자인원 *20%
소속	성 명	①교수·연구역량	②학생지도역량	③교수자질 및 기본역량		
평가점수 합계 A						

※ 신설학과로 소속학과 평가가 불가한 신임교원의 경우 평가결과는 “총점 / 40”으로 환산한다.

확 인 자 : 총장 (인)